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77
------------	-----

제출년월일 : 1999. 10. 5.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1. 개정사유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시행코자 함.

2. 개정골자

점용허가기간 중에 사업이 완료하였을 때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점용료 등을 반환(안 제7조 제1항)

3. 관련근거

- 규제완화및자치법규정비
- 입법예고 : 불필요

4. 본 문

덧붙임과 같음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그 잔여기간에 대한 점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3. 허가기간중에 사업이 완료하였을 때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해야 한다.</p>	<p>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그 잔여기간에 대한 점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허가기간중에 사업이 완료하였을 때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경우